

의안번호	제 800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1년 8월 25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800
----------	-----

제출연월일 : 2021년 8월 25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도내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등(안 제1조 ~ 제4조)
- 사용허가 등(안 제5조 ~ 제 8조)
- 시설입주 등(안 제9조 ~ 제10조)
- 관리·운영의 위탁 등(안 제11조 ~ 제12조)
- 그 밖에 준용사항 및 시행규칙 등(안 제13조 ~ 제14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관내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장애인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이란 각종 사업·행사·문화·학술·교류·단체 활동 등을 위하여 시설에 대한 사용·입주 등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입주자”란 제9조에 따라 시설에 입주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장애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에 소재한 밀레니엄타운 내로 한다.

제4조(시설 및 운영) ① 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프로그램실, 회의실 등
2.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회관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1. 장애인의 복지증진
2.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허가) ① 도지사는 회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 예정 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이 예정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1의 시설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회관 사용 중 시설물 손상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제7조(사용료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회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제8조(사용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별지 제 2호서식의 사용료 면제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시설 입주) ① 시설의 입주 자격은 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도 단위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 시설 입주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대상자 선정 및 대부료 책정 등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설에 입주하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된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대부료의 면제) 제9조에 따라 시설 입주한 입주자의 대부료를 「장애인 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입주자는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가 설립한 공사
2.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도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회관의 위탁운영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2. 회관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시설비·운영비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해야 한다.
3. 회관의 시설물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회관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회관의 시설물이 손상되면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13조(다른 조례의 적용) 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 설 사 용 료 기 준(제5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1. 기본시설			
가. 대회의실	1회/2시간	50,000	
나. 중회의실, 프로그램실	1회/2시간	30,000	
다. 소회의실, 그 밖의 시설	1회/2시간	15,000	
2. 냉·난방			
가. 대회의실	1회/2시간	20,000	
나. 중회의실, 프로그램실	1회/2시간	10,000	
다. 소회의실 그 밖의 시설	1회/2시간	10,000	

※ 적용기준

1. 주말, 공휴일 및 주간(09:00~18:00) 외 시간에는 기준 금액의 20% 가산
2. 매 1시간 초과 시마다 기준 요금의 20% 가산

[별표 2]

사 용 료 반 환 기 준(제7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천재지변이나 회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일 7일 전까지	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일 5일 전까지	납부한 사용료의 70퍼센트 해당액
	사용일 3일 전까지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 해당액
	사용일 전일	반환하지 않음

[별지 제2호서식]

사용료 면제 신청서

사용 (이용)자	주 소		
	단 체 명		전 화 번 호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 용 구 분	기본시설		
	부대시설장비		
사용(이용) 기간			
사용(이용) 목적			
행사(교육) 내용			
면 제 사 유			
첨 부 서 류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귀하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48조(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 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에 앞서 장애인 회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내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복지증진 기여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비(인건비, 시설유지비 등)와 시설 사용에 따른 수익료

3. 관련조문

- 안 제5조(사용허가)
- 안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기준으로 하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출
- 공공운영 유사사례 분석 및 공공재 성격을 고려하여 적적 운영 수익률을 반영한 비용책정

나. 추계 결과

- 2022년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운영비 : 250,000천원(물품비 포함)
- 2023년 이후 운영비 : '22년 운영비 150,000천원에서 물가상승률 반영
- 시설사용 수익료 : 2,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2,000	2,100	2,250	2,310	2,430	11,090	
장애인회관 수익금	2,000	2,100	2,250	2,310	2,430	11,090	
세 출	250,000	157,500	165,375	173,644	182,326	928,845	
장애인회관 민간위탁금 (도 100%)	250,000	157,500	165,375	173,644	182,326	928,845	
내 역	인건비	60,000	63,000	66,150	69,458	72,931	331,539
	공공요금	40,000	42,000	44,100	46,305	48,620	221,025
	시설관리비	50,000	52,500	55,125	57,881	60,775	276,281
	집기비품 구입비	100,000					100,000